장학 시행세칙

2006. 12. 21. 부분개정	2015. 03. 01. 전면개정	2021. 01. 01. 부분개정
2008. 01. 09.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1. 08. 01. 부분개정
2009. 06. 30. 부분개정	2016. 12. 20. 부분개정	2023. 02. 01. 부분개정
2010. 08. 01. 전면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4. 02. 26. 부분개정
2011. 07. 01. 부분개정	2017. 09. 01. 부분개정	2025. 02. 01. 부분개정
2012. 04. 01. 부분개정	2019. 03. 01. 부분개정	2025. 09. 01. 부분개정
2012. 09.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26. 01. 01 부분개정
2013. 02. 01. 부분개정	2020. 07.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전보건대학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23.02.01.>

①박애장학금<개정 2023.02.01.>

1. 청운리더십장학금 : 학생 간부로 임명되고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
2. HIT복지장학금(저소득층)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 학생 중 0구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구간 이내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소득구간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에 따른 “장학금 공시(통계)조사”와 관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제적 사정 곤란자’의 범위는 0구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9구간 까지로 한다.<개정 2026.01.01.>
3. HIT복지장학금(장애) : 학생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성적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청운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
5. 청운가족장학금 : 가족「형제, 자매, 남매, 부부, 부・모자 등」이 본교에 2인 이상 재학중일 경우 장학금 수혜액이 더 많은 학생에게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6. 청운동문장학금 : 본교 동문 본인 및 동문의 직계존속·비속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7.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법률시행 제42조 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 위로장학금 :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9. 총장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0. 교육보호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및 법률시행 제42조 대상자 중 본인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1. 통일부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시행지침 대상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2. 국가장학금 II유형(교비대응)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수혜대상 자 중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신설 2025.02.01.>

②근면장학금<개정 2023.02.01.>

1. HIT마일리지장학금 : 각종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2. HIT봉사장학금 :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일정시간 봉사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3. HIT메이커장학금 :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홍보활동을 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HIT인턴십장학금 : HIT인턴십(교내근로)에 선발된 자로 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활동을 한 학생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단, 시급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준용한다)
5. 효인성장학금 : 충효정신이 투철한 자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6. HIT피어튜터링장학금 :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피어튜터링장학금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부기명으로 재정지원사업명과 병행할 수 있다)

③탐구장학금<개정 2023.02.01., 2024.02.26.>

1. 여덕최우수장학금 : 신입생 중 입학종합 성적이 전체 1위인 자에게 여덕최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2. 총장미래인재장학금 : 신입생 중 입학종합 성적이 학과 전체 1위인 자에게 총장미래인재장학금을 지급한다.
3. 청운인재장학금
   가. 재학생 :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5점 이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나. 신입생 및 전공심화과정 편입생 : 입학성적순에 의하여 선정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다. 여덕최우수장학금, 총장미래인재장학금, 청운인재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인원에 대하여는 재 사정하지 않는다.
4. HIT글로벌장학금 : 해외일자리체험, 해외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해외프로그램에 선정된 자 또는 대학이 인정하는 기관의 해외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HIT외국어우수장학금 :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6. HIT외국어향상장학금 : 교내·외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적향상 및 성실히 수강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삭제 <2025.09.01.>
8. 전공심화장학금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매학기별로 지급한다.
9.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각각의 특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0. 국가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기준에 따른다.
11.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기준 및 장학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12. 맞춤형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정관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정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3. HIT다문화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으로 입학한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
14. HIT유학생장학금 : 외국국적 소유자로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
15. HIT-LOC장학금 : HIT-LOC 교육체계에 따라 타 학과 전공교과목을 학기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기의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16. HIT장학기금장학금 : 적립된 장학기금 중, 기부자가 요청하는 조건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7. 행복기숙사장학금 : 행복기숙사 수용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소득수준 70% 이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기숙사비의 50%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추천기준 및 추천학생은 행복기숙사에서 정한다.
18. 외국인유학생어학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중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이상 인증을 받은 대상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성적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25.02.01.>
19. 외국인유학생성실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및 수업 출석률이 80%이상인 대상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성적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25.02.01.>

제3조(장학금 지급시안의 작성) 매 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학과장에게 안내한다.<개정 2023.02.01.>

1. 장학생 선정 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학교 장학금 배정표
4. 이중추천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

제4조(HIT인턴십장학생의 배정 및 관리) HIT인턴십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02.01.>

1. 학생·취업처는 HIT인턴십장학생 필요 부서 및 학과로부터 필요한 학생 수를 신청 받는다.
2. 학생·취업처는 각 부서 및 학과에 HIT인턴십장학생 인원을 배정한다.
3.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선발한다.
4. 학생·취업처는 각 부서 및 학과의 선발된 HIT인턴십장학생에 대하여 승인한다.
5. 선발된 HIT인턴십장학생은 근무부서 및 학과의 지도에 따라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
6. 선발된 HIT인턴십장학생 관리는 해당 부서 및 학과에서 관리한다.

제5조(외부장학금 추천기준) 학과 교수회의는 외부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준으로 추천한다.<개정 2023.02.01.>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
3.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학년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장학생의 선발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에 의하되 가능한 한 상담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6조(교체 추천) 장학생으로 추천 받은 학생 중 본인이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 추천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특정장학기금 관리)

①봉우 장학금

1. 봉우(신현성) 장학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안에서 년 1회 지급한다. 단, 당해년도 지급후의 이자 기타수익의 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2. 임상병리과 재학생 가운데 성실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당해년도에 해당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임상병리과 교수로 구성되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②청산 장학금

1. 청산(이상귀) 장학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안에서 년 1회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이자 기타수익의 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2. 유아교육과 재학생 가운데 성실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당해년도에 해당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유아교육과 교수로 구성되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8조(장학사정관제도) 장학사정관은 장학금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일지라도 가계곤란(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상담 후 지급 할 수 있다. 단, 장학사정관제도는 지급사유 발생 시 운영

한다. <개정 2024.02.26.>

1. 장학사정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나. 교수 및 관련 직원 4인 이상으로 한다.
2. 장학금사정을 희망하는 대상 학생은 가계곤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정관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가계곤란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여부 및 장학금액을 사정한다.
4. 장학생 선발 시 성적기준은 미 적용한다.

제9조(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01.>

① 기술석사장학금 :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09.01.>

② 기술석사인재장학금<개정 2025.09.01.>

1. 신입생: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백분위 환산점수 85점 이상이며, 품행이 방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기술석사복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산정 학생 중 0구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구간이내인 자에 한하여 소득구간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이상인 자)<개정 2025.09.01.>

④ 기술석사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09.01.>

1. 본교 출신자로서 전공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2. 종합병원 근무자로서 관련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3. 논문발표 등 대학의 위상을 높인 자
4. 기타 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자

[본조신설 2023.02.01.]

제10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2.01.]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학년도 신입생은 소급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현재 2학년·3학년 재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급된 국가장학금Ⅰ유형 장학금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장려장학생의 관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세칙 시행일 이후에 2020학년도 장학사정 대상자 발생 시 종전 세칙을 적용 시행하며, 2021학년도 장학사정대상자부터 본 세칙을 적용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에 지급된 HIT복지장학금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22학년도에 지급된 통일부장학금 및 HIT복지장학금(장애)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교육부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확정 후 지급된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국가장학금 II유형(교비대응) 장학금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문기술석사과정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 지급 기준표<개정 2021.01.01., 2023.02.01., 2024.02.26., 2025.02.01., 2025.09.01.>

1. 박애장학금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청운리더십장학금	1종 :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수업료 100%
	2종 : 총학생회 부회장	수업료 75%
	3종 : 졸업준비위원장	수업료 60%
	4종 : 총학생회 부장, 대의원, 학보사편집장, 방송국실무국장, 동아리연합회장, 기숙사 숙장(남,여)	수업료 45%
	5종 : 총학생회 차장, 졸업준비위원	수업료 30%
	6종 : 반대표, 기숙사 층장(남,여), 학보·방송국 국원	수업료 20%
HIT복지장학금(저소득층)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인 자[소득구간 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구간]	소정금액
청운교직원자녀장학금	우리대학 교직원 직계자녀인 자	수업료 100%
청운가족장학금	우리대학에 가족 2인 이상이 재학중인 자	수업료 50%
청운동문장학금	우리대학 동문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인 자	500,000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자	수업료 100% (교비50%+국고50%)
위로장학금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소정금액
총장특별장학금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소정금액
교육보호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수업료 100% (교비100%)
통일부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수업료 100% (교비50%+국고50%)
HIT복지장학금(장애)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수업료 100%
국가장학금 II유형(교비대응)	장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지급 대상자	소정금액

2. 근면장학금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HIT마일리지장학금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	소정금액
HIT봉사장학금	학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소정금액
HIT메이커장학금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홍보활동을 한 자	소정금액
HIT인턴십장학금	HIT인턴십(교내근로)에 선발된 자로 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활동을 한 학생	소정금액
효인성장학금	충효 정신이 투철한 자	소정금액
HIT피어튜터링장학금	대학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자	소정금액
피어튜터링장학금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각종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자.	소정금액

3. 탐구장학금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여덕최우수장학금	전체 신입생 중 성적 수석인 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90점이상 유지 시 재학기간 지급	수업료 100%
총장미래인재장학금	학과 신입생 중 성적 수석인 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85점이상 유지 시 1년(2개 학기) 지급	수업료 100%
청운인재장학금	재학생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된 자 ※ 신입생 및 전공심화과정 편입생은 입학성적 순	1종 : 수업료 100%
		2종 : 수업료 70%
		3종 : 수업료 50%
		4종 : 수업료 40%
HIT글로벌장학금	각종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소정금액
HIT외국어우수장학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언어경시대회에 입상한 자	소정금액
전공심화장학금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수업료 10%
HIT외국어향상장학금	교내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소정금액
맞춤형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소정금액
HIT다문화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으로 입학한 자	소정금액
HIT유학생장학금	외국국적 소유자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소정금액
HIT-LOC장학금	타 학과 전공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학기평점이 우수한 자	소정금액
HIT장학기금장학금	적립된 장학기금 중 기부자 요청 조건에 부합하는 자	소정금액
교외장학금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사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금액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제도 조건에 부합하는 자	소정금액
외국인유학생어학장학금	한국어능력시험 6급 취득한 자	1종 : 수업료 14%
	한국어능력시험 5급 취득한 자	2종 : 수업료 12%
	한국어능력시험 4급 취득 후, 입학한 자	3종 : 수업료 8%
	한국어능력시험 3급 취득 후, 입학한 자	4종 : 수업료 6%
외국인유학생성실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출석률 95% 이상인 자로 유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1종 : 수업료 1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출석률 80% 이상인 자로 유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2종 : 수업료 8%

[별표 2] 청운인재장학금 장학인원 배정 기준표<신설 2023.02.01.><개정 2025.02.01.>

■ 인원산정 세부기준

- 신입생 및 전공심화과정 편입생 : 학과별 모집정원(정원내) 기준
- 재학생 :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사정인원 기준

재학생 수 (신입생 수)	1종	2종	3종	4종	합계	비고
10명 이하	-	-	1	-	1	
11명 ~ 20명	-	1	-	1	2	
21명 ~ 30명	1	1	-	-	2	
31명 ~ 40명	1	1	1	-	3	
41명 ~ 55명	1	1	1	2	5	
56명 ~ 70명	1	1	2	3	7	
71명 ~ 85명	1	2	2	3	8	
86명 ~ 100명	2	2	2	3	9	
101명 ~ 119명	3	2	2	3	10	
120명 이상	3	3	3	3	12	
합계	**13**	**14**	**14**	**18**	**59**	

[별표 3]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신설 2023.02.01.><개정 2024.02.26., 2025.09.01.>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기술석사장학금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수업료 20%
기술석사인재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선발인원 : 학과별, 학년별 각1명)	1,200,000원
기술석사복지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소득구간 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구간] (선발인원 : 학과별, 학년별 각2명)	1,800,000원
기술석사특별장학금 (선발인원 : 학과별, 학년별 각4명)	본교 출신자로서 전공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수업료 15%
	종합병원 근무자로서 관련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수업료 10%
	논문발표 등 대학의 위상을 높인 자	수업료 10%
	기타 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자	수업료 10%